

- Kautm 영남권 지회 -

TLO 세미나 및 교류회 결과보고서

□ 개요

- 회의명 : Kautm 영남권 지회 TLO 세미나 및 교류회
- 일 시 : 2019년 10월 21일(월) ~ 22일(화)
- 장 소 :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세미나홀
- 참석자 : 총 24개 대학, 73명 참석 ※참석자 명단 별첨 참고

□ 프로그램

일 시		내 용	비 고
10/21 (월)	13:30~14:00	등록	-
	14:00~14:30	Kautm 추진사업 안내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최경하 과장
	14:30~15:00	대학 TLO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성과 공유	부산대학교기술지주회사 김윤환 팀장
	15:10~16:30	[R&BD 연구기획] 대학 TLO R&D 융복합 방법론 - 기술(technology) 이외 분야(상표, 디자인 등)의 융복합을 통한 R&D 기획, 사업화 전략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곽재석 차장
	16:40~18:00	[TLO 이슈 I] 대학 기술이전 관련 회계/세무 이슈 분석 - 기술이전/무상특허양도 건에 대한 과세 이슈 - 기술이전 시 과세 관련 검토 사항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천정봉 팀장(회계사)
	18:00~18:10	[TLO 이슈 II] “교원창업” 감사원 감사 이슈	부산대학교기술지주회사 김성근 실장
	18:00~21:00	네트워킹 만찬	-
10/22 (화)	09:30~11:00	[멘토링] 대학별 융복합 연계 우수 사례 및 향후 추진 방향 토의	참석자 전원

□ 주요 내용(요지)

※ 발표자료 및 발표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한 발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학 TLO R&D 융복합 방법론

○ 융·복합 정의

-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된 공동 기술포트폴리오 기획, 이를 통한 실용화 기술 개발 (a.k.a. “Bridge+사업” 융복합 프로그램(grant))

※ 일반적 정의

- 융합 : 기존의 “기술 1+기술 2”을 통해 신기술 개발(ex. 의료 기술 + IT 기술 → 헬스케어 기술)
- 복합 : 본질은 유지하고 다른 기술 연결(건축 기술 + 음향 기술 → 공연장 완성)

○ 융·복합 필요성

- 각 대학별로 보유하고 있는 개별기술만으로는 사업화까지 발전시키기에 부족함
- 대학 간 융복합 프로그램을 통해, 강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R&D 성과물의 가치와 활용도 제고 가능
- 대학 간 융복합 프로그램을 통해, 후속 R&D, 기술이전, 대학발 창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필요

○ 대학 간 융·복합 플랫폼 모델



※ start 형태에 따라 협력형태 및 성과창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각 플랫폼 모델 별 사례는 발표자료 참고

○ 대학 간 융·복합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제언

① Bridge+ 미참여 대학으로의 확산 / 미참여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필요

→ 기존 협소한 범위 내에서의 TLO 네트워크를 탈피하여, 다양한 대학 TLO와 인적 네트워크, 정보 교환 필요

② 타 대학과의 융복합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 창출에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됨

③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대학의 경우, 융복합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 관심도,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융복합 프로그램이 기술사업화를 위한 마중물로 인지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2. 대학 기술이전 관련 회계/세무 이슈 분석

가. 기술이전 관련 세무 이슈 현안

○ 동남권 대학, 일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 “기술이전 관련(주로 무상 기술이전*) 납세자료(부가세, 법인세)” 해명 요구

* 기부채납, 연차유지 포기에 따른 발명자 무상양도 등

○ 미 소명 시, 특허비용, R&D비용 등을 근거로 과세 예고

○ 동남권 대학에 대한 세무서 요청사항 요약

구분	관할 세무서 요청사항	요청자료
A대학교	• 총 5건의 실시권(설정등록)에 대한 납세자료	• 기술이전 및 기술료 입금자료 • 정상기술료 관리 증빙자료
B대학교	• 무상기술이전(양도), 연차포기로 인한 발명자 무상양도 건에 대한 납세자료	• 기술이전 및 기술료 입금자료 • 연차포기 발명자 무상양도 증빙자료 • 기술료 분납 건 중 미수금 해명자료
C대학교	• 총63건의 양도(무상 5건, 유상 59건)에 대한 납세자료	• 기술이전 및 기술료 입금자료 • 정상기술료 관리 증빙자료
D대학교	• 총53건의 양도에 대한 납세자료 • (발명자 일부 무상양도, 개인 양도 포함)	• 기술이전 및 기술료 입금자료 • 개인 양도 해명 자료
E대학교	• 총188건의 양도에 대한 납세자료 - 무상기술이전, 발명자 무상양도 포함 - KIAT 기부채납제도 활용 기술이전 포함	• 기술이전 및 기술료 입금자료 • 연차포기 발명자 무상양도 증빙자료 • 기부채납 관련 증빙자료

나. 주요 쟁점

○ 세무 이슈와 관련하여, “무상 기술이전 건에 대한 특허권 자산가액(시가)”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 대학별로 상이한 “기술자문 보상금에 대한 세무처리” 이슈

※ 주요 쟁점에 대해 논하기 전에, 부가세 알기!!

☞ 개념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된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 생산 또는 거래단계에서 새롭게 창출한 가치의 증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text{매출액} \times \text{세율}) - (\text{매입액} \times \text{세율})]$$

☞ 부가세 과세대상 : 특허권은 '재화'로서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구분		구체적 범위
재화	유체물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축물 등 모든 유형적 물건
	무체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권리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유체물과 무체물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기타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권 등
용역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ex.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일 : 1년에 2회 신고 & 납부(1기, 2기)

구분	신고기간	신고납부일
1기	4.1 ~ 6.30	7.25
2기	10.1 ~ 12.31	1.25

☞ 그렇다면, 세무서는 왜?? TLO에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은 “무상 기술이전”에 대해 과세자료(부가세 등)를 요구하는가?

- 대학(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등록 비용에 대해 (매출세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 당해 등록특허가 무상양도 되더라도, 이미 당해 등록특허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공제 받은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함
- 즉, 무상양도로 인한 매출세액이 없어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가가치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상 자산가액 산정]

(1) 무상 또는 저가공급에 따른 공급가액(과세표준) 산정 기준

- 부가세법에 따르면, 특허권(재화) 무상양도 시 공급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함 (아래 표 참고)

cf) 대가 없는 실시권 허여, 노하우 이전 :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그러나 소득세법/법인세법 상으로는 과세대상임

구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무상)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외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외
부가세	재화 (특허권 등 양도)	시가	거래금액	시가	시가
	용역 (실시권 허여, 노하우 이전 등)	시가	거래금액	과세안함	과세안함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당행위(시가)	거래금액	부당행위(시가)	거래금액

※ 산학협력단과 기업, 교수는 특수관계자 외 관계임

cf) 산학협력단과 지주회사는 특수관계임

- 그렇다면,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 ① 정상적인 거래금액 → 무상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없음
- ② 감정평가 금액 → 일반적으로 무상양도 건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지 않음
- ③ 장부가액 → 법인세법상 장부가액과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가액이 다름

(2) 무상 공급한 특허권 “기부채납”은?

- 대가의 수령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 26 ① 20)
- 즉,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슈는 없음**

(3) 감가상각 대상자산(특허권 등) 무상 이전 시 공급가액 : “특례규정” 적용

- 부가가치세법 상 특허권 무상양도는, 특수관계자 외 간의 사업상 증여로 간주하고, 이 경우 공급가액은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함

대상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거래유형	수입금액	거래유형	공급가액
특수관계자	부당행위	시가***	부당행위	특례규정*
특수관계자 외	기부금 의제**	시가*** × 70%	사업상 증여	특례규정*

* 특례규정 : 부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2호,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

➡ **특허권(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 \text{해당 재화 취득가액} \times (1 - 25/100 \times \text{경과된 과세기간 수})$$

(과세기간 : 1기(1~6월), 2기(7~12월), 확정신고 기준)

- 위 산식에 따르면, **4번의 과세기간(2년)이 경과하면, 특허권 공급가액이 “0”이 됨**
→ 즉, **특허권이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부가세법 상 공급가액(과세표준)이 “0”가 되어 부가가치세 이슈가 없어짐**
- 단, 등록일 경과년수 2년 미만 특허권이 무상양도 되었다면, 재화취득가액(최초 장부가액)을 정의하고, 과세기간을 적용한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함
- 출원 중인 특허 장부가액(과세표준) : ‘0’ (법상, 특허등록 이후에 자산화 되어 감가상각되므로) → 즉, 출원 중인 특허를 무상이전 할 경우, 부가세 이슈 없음

[법인세 상 자산가액 산정]

○ 법인세법 상 특허권 무상양도는, “기부금”으로 간주 : 기부금 의제(법인세법 제24조**)

- 무상양도 특허권 정상가액 : 시가 × 70%
- 의제기부금 = 특허권 정상가액(시가 × 70%) - 무상양도(‘0’) ➡ 결국 시가의 70%는 기부금(비지정 기부금)으로 간주

- 법인세법상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① 정상적인 거래금액 → 무상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없음

② 감정평가 금액 → 일반적으로 무상양도 건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지 않음

③ 장부가액

- 재산 취득 금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 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예시) 특허취득가액을 출원, 등록비로 간주할 경우 : 취득가액 140원

법인세법상 특허권(무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 7년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된 특허 장부가액(시가) : 120원 $(140 - 140 \times (1/7))$

[기술자문 보상금에 대한 세무처리]

○ 대학별로 기술자문에 대한 발명자보상금액의 과세처리 기준이 상이함

○ 주요대학의 기술자문에 대한 과세처리 현황을 살펴보면(발표자료 참고)

- 기술자문에 대해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
- 기술자문에 대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함

○ 협회 차원에서, 전체 대학의 기술자문에 대한 보상금 과세처리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자문 보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을 일원화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음

3. “교원창업” 관련 감사원 감사 이슈

○ 지난 10월 16일, 감사원에서 부산대 포함 일부 대학에 “휴,겸직 허가 없이 교원창업, 자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교직원 현황 조사” 공문 발송

"신뢰받는 감사원, 국민과 함께 합니다."

감사원

바른감사
바른나라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감사자료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이 실시 중인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법」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청자료 : "붙임" 양식의 2015년 이후 교직원 휴,겸직허가 현황
※국립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소, 지방캠퍼스 등 산하기관을 포함
나. 제출양식: 전자파일(엑셀) 형태
다. 제출방법: 온나라 전자문서(협의 가능) 또는 전자메일(thediecast@korea.kr)
라. 제출기한: 2019. 10. 23.
마. 자료관련 문의: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 강길훈(전화: 010-2470-0747)

붙임 : 교직원 휴,겸직허가 현황 1부. 끝.

감사원장

수신자 강릉원주대학교총장, 강원대학교총장, 강원대학교법학원장, 강원대학교병원장, 경상대학교총장

○ 감사원 이슈

- 학교 허락/승인 없이 휴,겸직 후 교원창업 또는 자회사 참여 여부
- 교원창업, 자회사에 투입된 IP에 대한 적절한 기술료 책정 여부
- 교원이 계약서 따라 지분을 받고 있는지 여부

○ 대학 교원창업 관련 규정 현황

- 조사대상 : 14개 대학
 - 강원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울산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
 - 주요 국립대는 교원창업 관련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 조사기관 :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 조사결과 : 창업관련 조항 규정 현황

교원창업 관련 조항	대학 수	교원창업 관련 조항	대학 수
창업 정의	14	시설물 사용	7
창업 범위	14	시설물 관리	6
주관 부서의 명시	12	책임시수 감면	1
창업 심의(지원)위원회	12	창업활동 지원	6
창업 자격조건	12	기술(특허) 활용 및 대가	12
교원의 권리와 의무	10	창업 주식기부(강제조항)	11
창업 승인(신청절차)	14	기부주식 공동매도권	2
창업 제재(취소절차)	13	창업 후 특허(소유권)	4
창업 휴·겸직 절차	14	실태조사(자료제출)	11
창업 휴·겸직 기간	11	변경사항 통보의무	11
제한(승인, 재창업 등)	4	창업보육센터 관련 조항	1
창업 공간(학내 제한)	2	연구원 창업 관련 조항	1
-	-	학생 창업 관련 조항	4

- 고려대, 세종대, 한양대 등은 최근 교원창업 규정을 정비하였으나, 국립대를 포함한 그 외 대학은 관련 규정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 부산대의 경우, 최근 관련 규정 개정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 예정

○ 대응방안

- 감사원 감사를 차치하더라도, 각 대학별로 교원창업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관련 규정 마련 필요
- 대학별로 상이한 규정보다는, 다른 대학(한양대, 고려대 등)의 교원창업 규정을 참고하여 기본적으로 통일된(표준화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 규정을 토대로 각 대학의 상황,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권고함

□ 세미나 참석자

No.	소속	성명	직위
1	경남대	박숙현	.
2	경남대	정다정	.
3	경북대	이경자	과장
4	경북대	김성환	.
5	경북대	정수혜	.
6	경상대	김상현	실장
7	경상대	손미란	팀장
8	경상대	우지호	.
9	경상대	김태경	.
10	경상대	김동남	.
11	경상대	박윤정	.
12	경상대	박성수	팀장
13	경상대	박창훈	팀장
14	경상대	왕소정	.
15	경상대	김민지	.
16	경일대	이진우	.
17	경일대	김우재	.
18	경일대	김지희	.
19	계명대	박정민	.
20	계명대	박지수	.
21	대구가톨릭대	김세린	.
22	대구가톨릭대	김아름	.
23	DGIST	박길제	.
24	DGIST	정윤호	.
25	대구대	배근오	.

No.	소속	성명	직위
26	대구대	김지현	.
27	대구한의대	권오승	실장
28	대구한의대	박지인	.
29	동명대	박성규	.
30	동명대	이주호	.
31	동서대	박동창	.
32	동서대	박성환	부센터장
33	동아대	성낙용	.
34	동아대	김기연	.
35	동의대	윤대현	.
36	부경대	이경준	팀장
37	부산대	김성근	실장
38	부산대	김윤환	팀장
39	부산대	김민서	대리
40	부산대	안대건	대리
41	부산대	천정봉	팀장
42	부산대	이흥채	.
43	부산대	김태원	.
44	부산대	한진호	.
45	부산대	최미현	.
46	부산대	차다솜	.
47	부산대	차민정	.
48	부산대	박수현	.
49	숙명여자대	이승희	.
50	숙명여자대	김애희	센터장

No.	소속	성명	직위
51	신라대	박창건	.
52	신라대	김현정	.
53	영남대	차재은	.
54	영남대	김현미	.
55	UNIST	방기훈	.
56	UNIST	안재운	.
57	UNIST	이나래	.
58	UNIST	조나은	.
59	안제대	이은지	.
60	중앙대	곽재석	차장
61	창원대	박지영	.
62	창원대	백한별	.
63	포항공과대	손연호	과장
64	포항공과대	김규민	.
65	포항공과대	임택규	.
66	포항공과대	황정은	.
67	포항공과대	배영훈	.
68	포항공과대	김혜정	.
69	한국해양대	유선영	.
70	한국해양대	심영훈	.
71	재료연구소	황희철	.
72	KAUTM	최경하	과장
73	KAUTM	고은영	.

□ 모임 현장 사진

